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3월 22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3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3월 22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금천구에 거주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,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의 수립(안 제4조 및 제5조)
- 추진사업 및 사업의 위탁(안 제7조 및 제8조)
- 홍보 및 포창(안 제9조 및 제10조)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금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높이며 디지털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다. 주요 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3)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의 수립(안 제4조 및 제5조)
 - 정보 격차 해소의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함
 -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
- 4) 추진사업 및 사업의 위탁(안 제7조 및 제8조)
- 5) 홍보 및 포창(안 제9조 및 제10조)

라. 검토 의견

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1조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, 정보통신, 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
장애라는 이유로 주민의 알 권리,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 판단됨

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에 맞추어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